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17 발의연월일: 2024. 8. 26.

발 의 자: 곽규택・이헌승・조승화

백종헌 • 유상범 • 조배숙

박준태 • 주진우 • 장동혁

송석준 · 정연욱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단체로,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,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.

그러나 현행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,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별표 제219호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 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21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 법률 제 호

#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19	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5조의2	사용료등의 감면	2029. 12. 31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